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6. 21 선고 2022나44820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

담당변호사 이영진

피고, 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3. 5. 17.

판 결 선 고 2023. 6. 21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7. 21. 선고 2020가단5199812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72,698,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6. 12.부터 2021. 4. 27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피고는 원고에게 172,698,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항소취지]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 중 인용하는 부분

제1심판결의 이유 중 “1. 인정사실” 부분 및 “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”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 이 판결의 해당 부분에 기재할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4쪽 6~8행 중 “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. 6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”를 “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. 6. 12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1. 4. 27.까지는(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190,743,119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, 나중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소 제기 후 해당 거래처로부터 18,044,749원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172,698,370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 감축을 하였는데, 위와 같은 청구 감축의 시점과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) 상법이 정한 연 6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”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5쪽 6행 중 “피고는”을 “피고는 원고가”로 고친다.○ 제1심판결 5쪽 10행 중 “주식회사

H”을 “주식회사 G”로 고친다.

2. 이 법원의 추가 판단

가. 피고는 「F대학에 대한 매출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7,322,481원은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불법적으로 갈취한 돈이다」라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돈이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불법적으로 갈취한 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나. 피고는 「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, 이 때문에 거래처가 상실되거나 영업 규모가 축소되어 피고는 영업수수가 삭감되는 손해를 입었으며, 나아가 위 사유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해지로 인하여 피고는 종전에 폐기하였던 영업시설을 다시 개설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. 피고가 위와 같이 입은 손해는 적어도 2억 원에 달하므로,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상계한다」라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발생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상의 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(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하나, 그 법률적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)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(일부 지연손해금 부분)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인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,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황중연, 판사 임광호, 판사 선의종